

2024. 4. 17. (수)
제 351 회 임시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13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9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27일 홍성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87호
- 제 출 자: 홍성현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3월 27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연수(안 제6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탁(안 제7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에서는 교육감은 ①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③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④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가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운영 및 지원)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연수)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UN에서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하였고, 그 계기로 우리나라는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였음 이후 UN은 다시 한번 산림 보전 및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였음
-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62%가 산림면적으로 산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어, 효과적인 산림교육을 위해서는 유아 교육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산림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함

5. 참고 사항

- 가. 관련법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 2. 29.,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24. 2. 29., 감사관)
- 라.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 2. 29., 경제기획과)
- 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2024. 3. 7.,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운영 및 지원) 및 제6조(연수)
 -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산림교육에 관한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 예산액	비고
계		1,302,000	
미래인재과	학교숲조성	1,000,000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300,000	
	산림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2,000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외 조항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당관
예산분석팀장
주무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810호
- 제 출 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4월 2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학생의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1형 당뇨병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안 제4조)

-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사업(안 제6조)

-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 안 제3조(책무)에서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 교육감은 ①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②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③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④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⑤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⑥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⑦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사업)에서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①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에서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매년 당뇨병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건교사(또는 순회 보건교사) 배치교에서는 사전 학부모의 동의하에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만, 보건교사(또는 순회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경우 위급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에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18교)의 경우(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2교 포함)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과대학교의 경우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일반학급 36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당뇨 학생 현황

○ 당뇨병의 종류

구분	1형 당뇨	2형 당뇨
명칭	- 인슐린 의존형 당뇨 - 소아당뇨	- 인슐린 비의존형(저항성) 당뇨 - 성인형 당뇨
발병원인	-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 - 환경요인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발생 * 바이러스, 환경오염, 스트레스,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	-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에 의해 발생 -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서구형 식습관, 비만 등에 의해 인체 내 인슐린의 원활한 작용에 장애발생
발병시기	-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	-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
발병률	- 전체 당뇨병의 10%	- 전체 당뇨병의 90%
증상	- 갑자기 나타남	-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남
인슐린	- 생산되지 않음	- 소량 분비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
치료방법	- 주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 기본적인 당류 섭취량 관리	- 주로 경구약 등 섭취 - 식생활개선, 운동요법 등 실시

○ 당뇨(1형, 2형) 재학교 및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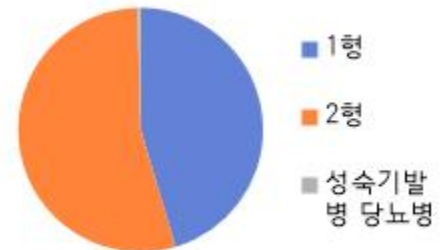
연도	재학교(교)	학생수(명)
2023	183	271
2022	166	229
2021	136	182
2020	119	160
2019	101	139



- ▶ 당뇨 학생 수, 재학교 2019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
- ▶ 당뇨 보호대책 수립 필요성 대두
- ▶ 학생-가정-학교 연계하여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2024년 건강관리 추진계획’ 발췌

○ 당뇨 유형(2023년)

구분	학생수(명)	비율(%)
1형	123	45.4
2형	147	54.2
성숙기발병 당뇨병	1	0.4
계	271	100



-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2024년 건강관리 추진계획’ 발췌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4.3.7.,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14., 감사관)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4.3.7.,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2024.4.2.,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재원생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2.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3.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4.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5.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7.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 6. 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지원계획) 및 제5조(실태조사)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6조(사업)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안 제6조)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시행, 구체적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추계하되,
 - 연도별 학생 수는 2019~2023년 간 당뇨 학생 수 평균 증가율 *에 해당하는 수를 산입하여 산출
- * 2024년 당뇨·아나필락시스 학생 보호대책 계획

- 지원단가는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가를 준용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880,000천원(연평균 176,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료비 지원	123,000	145,000	171,000	202,000	239,000	880,000
	소계(b)	123,000	145,000	171,000	202,000	239,000	880,000
□ 총 비용(b-a)		123,000	145,000	171,000	202,000	239,000	880,00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박미옥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827호
- 제출자: 박미옥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계획(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 교육감은 ① 기본방향 및 목표 ② 각종 교육지원 사업 ③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④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정보제공)에서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점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어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증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충남)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등록상 인구	248,411	243,870	240,954	240,272
재학생수	238,888	235,447	234,956	234,192
학교 밖 청소년 (재학생 수 대비 비율 %)	9,523 3.99	8,423 3.58	5,998 2.55	6,080 2.60
꿈드림 이용자	2,312	2,491	2,414	2,343
은둔형 청소년	7,211	5,932	3,584	3,737

※ 출처: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 국가통계포털, 교육통계서비스, 청소년안전망시스템

※ 재학생수 연령: 8세~19세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이용자, 은둔형 청소년 연령: 9세~24세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충남)

(단위: %, 명)

구분	충남			전국		
	학업중단률	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학생수	학업중단자
2020	0.6	235,447	1,407	0.6	5,346,874	32,027
2021	0.7	234,956	1,682	0.8	5,323,075	42,755
2022	0.8	234,192	1,975	1.0	5,275,054	52,981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1.8., 감사관)

라.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12.28., 정책기획과)

마. 비대상 사유서(2024.2.15.,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각종 교육지원 사업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7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항 이하 각 생략)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4. 1.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선 권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 및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의 확보,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필요 ○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지원)
 -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액	비고
계		313,500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	213,500	충청남도청 전출금
	급식비지원	26,000	
	프로그램운영비	187,500	
미래인재과	학교밖드론파일럿양성	100,000	

자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그 외 조항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이광복

 041-635-5207(bu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828호
- 제 출 자: 구형서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2. 개정 이유

-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라.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 사업(안 제5조)

마. 학교 먹는물 관리(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 안 제3조(책무)에서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관리계획)에서 교육감은 ① 목표 및 방향 ② 수질 검사 ③ 노후 급수설비 개선 등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에서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① 먹는물 수질검사 ②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③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도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도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①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교체 ②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 부착 ③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노후 배관의 위생상 조치를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학교 급수관 세척을 매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수시설개선’의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수질검사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학생이 마시는 먹는물 및 몸을 씻기 위한 수도물 공급뿐만 아니라 급식을 포함한 조리나 세척을 위한 먹는물 공급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관련법규: 먹는물관리법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3.25.,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29., 감사관)
-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3.26., 정책기획과)
- 바. 비대상사유서(2024.3.29.,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게 공급하도록

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의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수질 검사
3. 노후 급수설비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3.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교체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수장치”란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내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 6의2.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6의3.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6. 1., 2013. 3. 22.>

③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24.>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8. 12. 24.>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8. 12. 24.>

[제목개정 2013. 3. 22.]

□ 수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보건법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舎垡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2021. 12. 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2021. 12. 28.>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

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垆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7>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 (1)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부고시 제 2022-20호, 2022.7.14., 일부개정]

아. 먹는 물

1)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물(지하수·수돗물 및 정수기 통과수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 통과수(냉·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1) 학교내 상·하수도 설계도면 비치 사항 등을 조사하며, 누수 및 노후여부를 확인한다.

2) 저수조는 「수도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되, 직접 음용하거나 음식의 조리 및 세척, 손 씻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이 경유하는 저수조에 대하여는 청소 및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3) 우수 및 오수 등의 배수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및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관리계획)

- 학교 먹는 물 관리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사업) 및 제6조(학교의 먹는 물 관리)

- 동 조례안은 학교의 먹는 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액	비고
합 계		817,759	
소계	학교먹는물위생관리	419,363	
체육건강과	학교먹는물위생관리	411,229	
천안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600	
공주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780	
보령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1,110	
아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640	
서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88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300	
당진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720	
금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600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액	비고
부여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540	
서천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400	
청양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280	
홍성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240	
예산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344	
태안교육지원청	학교먹는물위생관리	700	
소계	급수시설개선	398,396	
천안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54,720	
공주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68,906	
당진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91,370	
부여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52,400	
홍성교육지원청	급수시설개선	131,000	

자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외 조항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이광복

☎ 041-635-5207(buget20@korea.kr)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824호
-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2. 제안 이유

-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본 조례 제정, 2006년부터
초등교사 수급 안정 판단으로 신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종료
- 2007학년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신입생 충청남도교육감 우선선발
추천 전형 미 실시
-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전무하여 2010년도 이후 해당
장학금 사업 종료로 인한 조례 운영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종합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초등교사 수급이 안정화되고 신규 장학금 신청이 전혀 없어, 장학금 수혜자 미선발에 따른 해당 사업 종료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 가.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 의견없음(2024. 1. 24.~2024. 2. 15.)
-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2024. 2. 8., 민주시민교육과)
-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2024. 1. 30., 감사관)
- 마. 규제심사: 폐지조례 원안가결(2024. 3. 6., 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 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과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1급·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주교대 3학년에 교육감 추천으로 편입학한 학생 및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졸업 후 충청남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에 근무할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이 특별 추천하여 입학한 자.
2.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감이 추천하여 공주교대 3학년에 특별편입한 자.
3.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교육규칙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는 자중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자.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이 매년 초등교원 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기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잔여 수학기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고 학생 및 보증인인 보호자로 하여금 제7조 내지 제10조의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서약 받고 지급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5.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때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90일이내로 한다.

1.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text{반납금액} = \text{지급한 장학금총액}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독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은 공주교대 4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아 공주교대를 졸업한 자는 교

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추천으로 입학 및 편입학 한 자 : 4년
2. 재학생으로 1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 4년
3. 재학생으로 2·3·4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3. 기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공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소요재원) 장학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55호,2003.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3학년도 공주교대에 재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431호, 2023. 10. 12. 시행]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